

## 공제회규정

제정	1982. 8. 19	개정	2010. 12. 14
개정	1986. 11. 19	개정	2011. 4. 12
개정	1987. 11. 9	개정	2011. 6. 21
개정	1989. 7. 21	개정	2011. 10. 18
개정	1991. 4. 9	개정	2012. 7. 26
개정	1993. 4. 13	개정	2013. 4. 10
개정	1995. 1. 20	개정	2014. 5. 23
개정	1995. 3. 21	개정	2015. 3. 17
전문개정	1996. 4. 15	개정	2017. 2. 10
개정	1999. 4. 2	개정	2018. 11. 27
개정	2000. 4. 7	개정	2019. 4. 2
개정	2000. 11. 7	개정	2020. 9. 8
개정	2001. 4. 10	개정	2022. 5. 24
개정	2001. 6. 26	개정	2023. 5. 9
개정	2002. 10. 30	개정	2024. 2. 6
개정	2003. 3. 6	개정	2024. 9. 9
개정	2006. 2. 3	개정	2025. 1. 10
개정	2008. 2. 26	개정	2025. 2. 10
개정	2009. 4. 14	개정	2025. 6. 1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공제회(이하 “이회”라 한다)라 한다.(99. 4. 2 개정)

**제2조(목적)** 이회는 회칙 제3조 제2항 제10호에 의하여 회원의 공제복지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7. 26 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업연수”라 함은 이회의 회원이면서 회비를 매년 납부한 통산연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통산하여 개업연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가.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기간
  - 나. 휴업을 한 기간
  - 다. 실적회비 시행 후 납부실적이 없는 연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윤리규정”이라 함은 회칙 제40조에 의하여 제정된 회규를 말한다.
3. “회비”라 함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에서 정한 입

회금(일반회계, 공제회계), 일반회비(중신회비 포함), 실적회비(법인·소득·기타회비, 구 특별회비 포함), 공제회비를 말한다.(99. 4. 2 개정)

4. “회계연도”라 함은 회칙 제49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4조(기간계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5조(사업)** 이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은퇴회원 및 노령회원에 대한 공제금 지급(2011. 4. 12 개정)
2. 회원에 대한 일시지급금 지급(2000. 11. 7 개정)
3. 회원에 대한 경조금 지급
4.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사업 및 부대사항

##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이 된 자는 이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회를 퇴회한 것으로 본다.

1. 폐업자
2.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자
3. 제명된 자
4. 회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퇴회한 자(99. 4. 2 개정)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99. 4. 2 개정)

**제7조(은퇴회원 및 노령회원)** ① 은퇴회원이란 이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2013. 4. 10 개정)

② 노령회원이란 이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노령공제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2013. 4. 10 신설)

**제8조(임원)** 이회의 임원은 본회의 임원이 각각 그 직에 임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본회 회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 2. 10 개정)

**제10조(총회 등)** 이회에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며 회의에 관하여는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관한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입회금 결정의 기준 설정
  3. 공제회비 결정의 기준 설정(99. 4. 2 개정)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이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4.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2008. 2. 26 개정)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공제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99. 4. 2 개정)
  4. 기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 제 3 장 공제위원회

**제12조**(공제위원회) 이 규정이 정하는 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회에 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99. 4. 2 개정)

**제1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이 회의 운영에 관한 독립성·전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2. 공제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2008. 2. 26 개정)
3. 이 회의 회비 징수 및 공제기금관리에 관한 건의사항(2009. 4. 14 개정)
4. 이 규정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2009. 4. 14 개정)
6.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의 및 유권해석 요청에 관한 사항(2009. 4. 14 개정)
7. 이 회의 홍보,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0명 내외로 하고 위원 중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2017. 2. 10 개정)

② 위원장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다.(2020. 9. 8 개정)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2022. 5. 24. 단서 신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

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11. 27 개정)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13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7. 2. 10】

**제18조(의사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의 집행)** 삭제(2008. 2. 26)

**제21조(수당)** 위원회가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공제금 등

**제22조(공제금등의 종류)** ① 공제금(일반공제금, 노령공제금, 공제일시금), 일시지급금, 경조금의 3종으로 한다.(2011. 4. 12 개정)

② 일반공제금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11. 4. 12 신설)

③ 노령공제금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11. 4. 12 신설)

④ 공제일시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일반공제금의 신청대상자가 일시에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2011. 4. 12 신설)
2. 일반공제금 또는 노령공제금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2011. 4. 12 신설)

⑤ 일시지급금은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11. 4. 12 신설)

⑥ 경조금은 이 규정세칙에서 정하는 경조사가 발생하여 총회 세출예산 승인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2011. 4. 12 신설)

**제23조(공제금)** ① 공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2017. 2. 10 개정)

1. 일반공제금은 제6조 제2항의 사유 발생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사업을 폐업한 회원이 신청하는 때에 지급한다.(2017. 2. 10 개정)

- 가. 개업연수가 통산 만15년 이상이고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나. 개업연수가 통산 만20년 이상인 경우  
 다. 개업연수가 통산 만10년 이상이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노령공제금은 개업연수가 통산 만 15년 이상이고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로서 개업 회원 및 휴업회원이 신청하는 때에 지급한다. 단, 2025년 4월 1일부터 3년에 1세씩 <별표 4>에 따라 만 75세에서 만 70세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한다.(2025. 2. 10 개정)
  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제일시금을 지급한다.(2011. 4. 12 신설)
  4.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원(은퇴회원 포함)이 공제금을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지급금을 지급한다.(2011. 4. 12 개정)
  - 4-1.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령공제금 수령 중에 폐업한 경우 노령공제금의 잔액을 일반공제금으로 수령하거나 공제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일시금은 노령공제금 잔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2013. 4. 10 개정)
  5.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미납회비 연수가 있거나 1년 이상 지연하여 납부한 경우 그 연수만큼 개업연수에서 차감한 후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공제금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99. 4. 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다.
    - 가. 2015. 3. 31까지 본회에 입회한 회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에 의한다. 다만, 지급총액은 개정 전 배율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금을 한도로 한다.(2015. 3. 17 개정)
      - (1) 2011. 4. 30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1>에 따른 배율
      - (2) (2015. 3. 31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2>에 따른 배율) - (2011. 4. 30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2>에 따른 배율)
      - (3) (신청시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3>에 따른 배율) - (2015. 3. 31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 <별표 3>에 따른 배율)
    - 나. 2015. 4. 1 이후 입회한 회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급총액은 회비납부액의 1.75배를 한도로 한다.
 
$$\text{회비납부액} \times \text{<별표 3>에 따른 배율} = \text{공제금}$$
    -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공제입회비를 100만원 초과납부한 회원의 퇴회시 초과납부한 금액을 공제금 지급총액에 합산 지급한다.(2011. 4. 12 개정)
  2.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 [\text{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출된 공제금}] - \text{기지금액} \} \times 1/2$$

3. 제2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25조의 “회비납부액”이라 함은 회원개인별 공제회비 총 납부액과 총 실적회비의 30%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000. 11. 7 개정)
4. 제2호에서 “기지금액”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지급한 공제금총액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제금을 일시에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일시금으로 지급한다.(2011. 4. 12 개정)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회원이 일반공제금을 일시에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 나.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의 회원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배율은 <별표>에서 정한 율을 적용한다.
7. 공제회비 납부는 35년으로 한다.(2000. 11. 7 신설)
  - 가. 노령공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2011. 4. 12 신설)
  - 나. 노령공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회비 및 실적회비는 폐업 시까지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공제금의 매월지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99. 4. 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 경우는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2011. 4. 12 개정)
  2. 삭제(99. 4. 2)
  - ④ 일반공제금 및 노령공제금의 지급은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한다.(2017. 2. 10 개정)
    1.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또는 제2호 경우는 은퇴회원 또는 노령회원이 사망한 날(2011. 4. 12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는 장애가 해소된 날(2011. 4. 12 개정)
    3. (2000. 11. 7 삭제)
  - ⑤ 일반공제금 및 노령공제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제4항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지급한다.
  - ⑥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장애가 발생한 회원이란 이 회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이 규정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회원을 말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7. 2. 10 개정)
  - ⑦ 제4항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기수령한 공제금액이 퇴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지급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⑧ 은퇴회원이 공제금을 수령하다 다시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였을 때는 공제금 잔액의 1/2을 일시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신입회원의 자격으로 입회절차를 밟아야 한다.(2000. 11. 7 개정)

⑨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은퇴회원이 완쾌되어 타직종의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공제금의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달부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1. 4. 12 개정)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7. 2. 10 개정)

1. 세무사법 제22조와 동법 제22조의2에 의한 벌칙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 및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우
2. 공제금 지급신청일이 세무사법에 의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집행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022. 5. 24 개정)
3. 공제금 지급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세무사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을 받은 경우(99. 4. 2 개정)
4. 공제금 신청일 이후 전 제2호의 처분 또는 제3호의 확정이 있는 경우(99. 4. 2 개정)
5. (2009. 4. 14 삭제)

⑪ 제10항에 의하여 공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해당 처분 등이 확정되어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일단 그 시점에서 공제금으로 정산지급하고 제10항의 사유가 확정 3년이 경과한 후 새로 개업을 할 때는 개업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7. 2. 10 개정)

⑫ 전쟁, 지진,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금 및 일시지급금의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2001. 4. 10 개정)

⑬ (2009. 4. 14 삭제)

**제24조(일시지급금)** 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사망 또는 폐업으로 이 회를 퇴회(휴업은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일시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개업연수가 통산 만 5년 미만인 회원의 경우 이 회를 퇴회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일시지급금과 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2000. 1 1. 7 개정)

③ 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퇴회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 시 조의금과 일시지급금(제23조 제2항 제5호의 공제일시금 포함)을 합산하여 지급한다.(2001. 4. 10 개정)

④ 일시지급금을 수령했던 회원이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할 때에는 신입회원의 경우와 같다.(2000. 11. 7 개정)

⑤ 일시지급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한다.(2002. 10 . 30 신설)

**제25조(일시지급금의 계산)** ① 일시지급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다. 다만,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2011. 4. 12 개정)

1. 2015. 3. 31까지 본회에 입회한 회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에 의한다. 다만, 지급총액은 개정 전 배율에 의하여 산출된 일시지급금을 한도로 한다.(2015. 3. 17 개정)

가.  $(2011. 4. 30 \text{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times \langle \text{별표 1} \rangle \text{에 따른 배율}) \times 1/2$

나.  $\{(2015. 3. 31 \text{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times \langle \text{별표 2} \rangle \text{에 따른 배율}) - (2011. 4. 30 \text{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times \langle \text{별표 2} \rangle \text{에 따른 배율})\} \times 1/2$

다.  $\{( \text{신청시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times \langle \text{별표 3} \rangle \text{에 따른 배율}) - (2015. 3. 31 \text{ 이전까지 납부한 회비납부액} \times \langle \text{별표 3} \rangle \text{에 따른 배율})\} \times 1/2$

2. 2015. 4. 1 이후 입회한 회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급총액은 회비납부액의 1.75배를 한도로 한다.(2015. 3. 17 개정)

$(\text{회비납부액} \times \langle \text{별표 3} \rangle \text{에 따른 배율}) \times 1/2 = \text{일시지급금}$

②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공제입회비를 100만원 초과납부한 회원의 퇴회시 초과납부한 금액의 50%를 일시지급금 지급총액에 합산 지급한다.(2011. 4. 12 개정)

**제26조(경조금)** ① 회원에게 이 규정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세출예산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규정에서 “경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경조사 발생일 현재 휴업중인 회원은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2017. 2. 10 개정)

② (2009. 4. 14 삭제)

**제27조(지급절차)** ① 공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 공제금 등 지급신청서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수령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을 경유하여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서류여야 한다. 단, 경조금의 경우 지방세무사회에서 접수 및 지급하도록 하며, 예산회계 규정 제39조(지방세무사회의 보고)에 따라 그 내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5. 2. 10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제금등을 지급한다.(99. 4. 2 개정)

1. 경조금 및 일시지급금 지급 신청의 경우는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사유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만, 재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한다.(2000. 11. 7 개정)

2. 일반공제금 지급신청의 경우는 최초의 월 분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6월 10일, 12월 10일까지 제출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원장이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만, 지급종료일 1년 전부터는

매분기별 10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7. 2. 10 개정)

3. 노령공제금 지급신청의 경우는 최초의 월 분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노령공제금 수령 중 휴·폐업한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 12월 10일까지 제출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원장이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만, 지급종료일 1년전부터는 매분기별 10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 ③ 공제금 등은 지급일 현재 체납된 회비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 ④ 제3호 서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구두로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000. 11. 7 개정)
- ⑤ 은퇴회원 및 노령회원이 재개업을 하였을 때에는 개업연수에 합산하지 않는다.(2017. 2. 10 개정)

**제28조(수령권자)** 공제금 등을 수령할 권리자는 본인으로 하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의 연장자순으로 한다.(2024. 2. 6 개정)

**제29조(시효)** ① 제27조에 의한 공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따라 이전 소속 지방회에서 직권으로 공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2024. 9. 9 개정)

- ② 회원 본인의 칠순에 대한 경조금은 시효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소속 지방세무사회에서 칠순 경조금에 해당하는 회원을 안내하여야 한다.(2024. 9. 9 개정)

**제29조의2(체납회원에 대한 공제금 등 정산)** ① 소속 지방세무사회가 회비납부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회비 정산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제금 등을 지급 신청한 후 체납회비를 정산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 ② 전항에 따른 지급신청은 공제일시금 또는 일시지급금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체납회비를 정산하고 남은 공제일시금 또는 일시지급금은 공제기금과는 별도의 하나의 개별예금으로 관리하며 발생한 이자는 공제기금에 귀속된다.(2024. 9. 9 개정)
- ④ 위원회는 전항의 공제일시금 또는 일시지급금을 수령할 권리자(이하 '수령권자'라 한다)가 체납회비 정산일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령권자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제4항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사신문 등으로 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수령권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2024. 9. 9 개정)

- ⑥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제일시금이나 일시지급금은 공제기금으로 환수한다.(2017. 2. 10 개정)
- ⑦ 공제금 등으로 채납회비가 정산된 회원이 다시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할 때는 신입회원의 자격으로 입회절차를 밟아야 한다.(2017. 2. 10 개정)

**【2012. 7. 26 본조신설】**

**제30조(양도 및 담보금지)** 공제금 등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7. 2. 10 개정)

**제31조(이의신청)** ① 공제금 등의 지급에 이의가 있는 자, 공제금 등 지급신청내역의 변경, 취소가 필요한 자의 경우 공제금 지급통지서가 발송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2024. 2. 6 개정)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회장은 이를 상임이사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 5 장 재 정

**제32조(공제기금)** ① 이 회의 공제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99. 4. 2 개정)

1. 공제회 입회금(99. 4. 2 개정)
  2. 공제회비(99. 4. 2 개정)
  3. 일반회계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5. 기금 운용 수익금(2017. 2. 10 신설)
  6. 기타 수입(2017. 2. 10 호 번호 변경)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비의 납부수준은 공제기금의 수준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99. 4. 2 개정)
  - ③ 회원은 총회에서 세입예산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비를 입회 시 및 일반회비 납부 시 동시에 납부한다.
  - ④ 기납부한 제1항 제1호의 회비는 회비납부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 ⑤ 폐업회원 등이 재입회할 경우도 신입회원의 경우와 같다.(2000. 11. 7 개정)
  - ⑥ 일반회계 전입금과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은 각각 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2017. 2. 10 개정)

**제33조(기금의 관리)** ① 공제기금은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2017. 2. 10 개정)

- ② 공제기금이 일정액 이상 축적된 때에는 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후 공제기

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1. 기금증식과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재산취득·처분 및 투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특수법인, 주식회사(A+등급 이상의 회사에 한한다)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7. 2. 10 개정)
  3. 복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임대
  4. 회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금대출 사업
  5. 기타 부대사업
- ③ 제2항에 의한 기금 투자 시 운용기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익성이 가장 좋은 상품을 선정한다.(2010. 12. 14 개정)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는 운영세칙에서 정한다.(2017. 2. 10 개정)

**제34조(규정준용)**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및 결산은 본회의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제반회규를 준용한다.

## 제 6 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① 이 회의 사무는 본회 사무처에서 이를 담당한다.(2017. 2. 10 개정)

② 이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회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 부 칙 (1982.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 10.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현행 공조회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동진)**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본회의 회원인 자는 이 규정 시행일에 이 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회원이 세무사업만을 폐업하고 변호사업 또는 공인회계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폐업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일)** 부칙 제4조는 조문의 해석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 11.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본회 회원중 개업회원은 이 회의 회원으로 본다.

② 이 규정에 의한 배분금의 지급은 87회계연도 개시이후 퇴회하는 회원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조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제11조에 의한 부모의 경조사 시 지급하는 경조금의 경우 회원의 요청에 따라 부 또는 장인(시부) 중 한분, 모 또는 장모(시모)중 한분을 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조는 본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경조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11.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7.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4. 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1991년 4월 1일 이후 입회한 회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 4.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제2항은 1978회계연도 이후 실적회비(중전의 특별회비를 포함)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99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 신청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부 칙 (1996.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현행 공제회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본회의 회원인 자는 이 규정 시행일에 이 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배분금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제25조에 의한 최초의 배분금 계산은 이 규정 시행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회원별 현재가치액의 산정은 시행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현재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 규정세칙에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전에 발생한 경조사항 및 배분금에 대하여는 중전의 공제회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중전의 공제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복지연금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는 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중전의 공제회규정에 의하되 연금 월액은 95년 회계연도에 지급한 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전의 공제회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 제27조를 적용한다.

#### 부 칙 (199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금 적용례) ① 배분금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1.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공제금 및 경조금 신청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경조금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부 칙 (201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7의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2025. 6. 10 개정)

### 경조금 지급신청서

세 무 사 등 록 번 호		회 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사무실: 핸드폰:
사 무 소 주 소			
신 청 사 유			
경 조 일 시	20    년    월    일		
계 좌 번 호	은행명 :                    계좌번호 :		
화 환 / 조 화 신 청 여 부	신청(분회 회장 <input type="checkbox"/> , 지방회장 <input type="checkbox"/> )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일회용품(세무사회 로고) (1box 300인분, 187,000원)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한국세무사회 공제회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경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하

관 계	지급기준	첨부서류	관 계	지급기준	첨부서류
본 인	결 혼	-청첩장	배우자	사 망	-사망진단서 1부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칠 순	-주민등록등본		부 모	사 망
	사 망	-사망진단서 1부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경조금 수령자 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 녀		결 혼
	재 해	-피해사실확인서 1부 (또는 재해증명서 1부)		사 망	-사망진단서 1부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공제회 규정 제29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조는 경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 칠순 제외)
- ※ 2009. 5. 1 이전 본인 회갑 축의금을 수령하신 세무사님은 칠순 축의금을 재차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사망으로 인해 조화를 2개 신청하신 경우 경조금에서 1개의 화환대만 차감하고 송금하여 드립니다. (1개 신청 시 경조금 미차감)
- \* 결혼으로 인해 화환을 신청하신 경우 경조금에서 화환대를 차감하고 송금하여 드립니다. (1개 신청 시 1개의 화환대 차감, 2개 신청 시 2개의 화환대 차감)
- \* 경조금 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모사망 경조금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2인 이내만 지급합니다.
- \* 일회용품(상조키트) 신청 시 경조금에서 187,000원을 차감하고 송금하여 드립니다.
  - ▶ 일회용품(300인분) : 국(밥)공기, 종이컵, 소주컵, 식기, 접시(대,중,소), 식탁보, 수저케이스, 부의록

〈별지 제3호서식〉(2019. 4. 2 개정)

### 노령회원의 공제금 변경신청서

세 무 사 등 록 번 호		회 원 성 명	
생 년 월 일		진 화 번 호	
주 소			
공 제 금 신 청	<input type="checkbox"/> 일 반 공 제 금 <input type="checkbox"/> 공 제 일 시 금		
신 청 사 유	<input type="checkbox"/> 폐 업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계 좌 번 호	( 은 행 :                      , 예 금 주 :                      )		

한국세무사회 공제회규정 제2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④

### 한국세무사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세무사휴업(폐업)신고서 1부

※ 노령회원의 공제금 수령방법 변경안내

1. 노령회원이 폐업하여 일반공제금으로 변경신청 한 경우 노령공제금의 잔액을 일반 공제금으로 매월 55만원씩 소진시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년 6월 10일, 12월 10일까지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종료일 1년전부터는 매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1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노령회원이 폐업하여 공제일시금으로 변경신청한 경우 노령공제금 잔액의 60%를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3. 일반공제금 수령 중 재개업 시 잔액의 1/2을 일시지급금으로 지급 하고 신입회원의 자격으로 입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별 표 1>

(2011. 4. 30 이전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0.5년	1.55	12.0년	2.70	23.5년	3.85
1.0년	1.60	12.5년	2.75	24.0년	3.90
1.5년	1.65	13.0년	2.80	24.5년	3.95
2.0년	1.70	13.5년	2.85	25.0년	4.00
2.5년	1.75	14.0년	2.90	25.5년	4.05
3.0년	1.80	14.5년	2.95	26.0년	4.10
3.5년	1.85	15.0년	3.00	26.5년	4.15
4.0년	1.90	15.5년	3.05	27.0년	4.20
4.5년	1.95	16.0년	3.10	27.5년	4.25
5.0년	2.00	16.5년	3.15	28.0년	4.30
5.5년	2.05	17.0년	3.20	28.5년	4.35
6.0년	2.10	17.5년	3.25	29.0년	4.40
6.5년	2.15	18.0년	3.30	29.5년	4.45
7.0년	2.20	18.5년	3.35	30.0년	4.50
7.5년	2.25	19.0년	3.40	30.0년	4.50
8.0년	2.30	19.5년	3.45	이상	(4.5 한도)
8.5년	2.35	20.0년	3.50		
9.0년	2.40	20.5년	3.55		
9.5년	2.45	21.0년	3.60		
10.0년	2.50	21.5년	3.65		
10.5년	2.55	22.0년	3.70		
11.0년	2.60	22.5년	3.75		
11.5년	2.65	23.0년	3.80		

\*계산식 : (공제회비+실적회비 30%)×{3+[(n-15)×0.1]}  
 \*n : 개업연수(회비납부연수)

<별 표 2>

(2011. 5. 1 이후부터 2015. 3. 31까지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개업 연수	배율
0.5년	0.05	12.0년	1.20	23.5년	2.35
1.0년	0.10	12.5년	1.25	24.0년	2.40
1.5년	0.15	13.0년	1.30	24.5년	2.45
2.0년	0.20	13.5년	1.35	25.0년	2.50
2.5년	0.25	14.0년	1.40	25.5년	2.55
3.0년	0.30	14.5년	1.45	26.0년	2.60
3.5년	0.35	15.0년	1.50	26.5년	2.65
4.0년	0.40	15.5년	1.55	27.0년	2.70
4.5년	0.45	16.0년	1.60	27.5년	2.75
5.0년	0.50	16.5년	1.65	28.0년	2.80
5.5년	0.55	17.0년	1.70	28.5년	2.85
6.0년	0.60	17.5년	1.75	29.0년	2.90
6.5년	0.65	18.0년	1.80	29.5년	2.95
7.0년	0.70	18.5년	1.85	30.0년	3.00
7.5년	0.75	19.0년	1.90	30.5년	3.05
8.0년	0.80	19.5년	1.95	31.0년	3.10
8.5년	0.85	20.0년	2.00	31.5년	3.15
9.0년	0.90	20.5년	2.05	32.0년	3.20
9.5년	0.95	21.0년	2.10	32.5년	3.25
10.0년	1.00	21.5년	2.15	33.0년	3.30
10.5년	1.05	22.0년	2.20	33.5년	3.35
11.0년	1.10	22.5년	2.25	34.0년	3.40
11.5년	1.15	23.0년	2.30	34.5년	3.45
				35.0년	3.50
				35.0년	3.50
				이상	(3.5 한도)

\*계산식 : (공제회비+실적회비 30%)×{1.5+[(n-15)×0.1]}  
 \*n : 개업연수(회비납부연수)

<별 표 3>

(2015. 4. 1 이후 배율)

개업연수	배율	개업연수	배율	개업연수	배율
0.5년	0.025	12.0년	0.600	23.5년	1.175
1.0년	0.050	12.5년	0.625	24.0년	1.200
1.5년	0.075	13.0년	0.650	24.5년	1.225
2.0년	0.100	13.5년	0.675	25.0년	1.250
2.5년	0.125	14.0년	0.700	25.5년	1.275
3.0년	0.150	14.5년	0.725	26.0년	1.300
3.5년	0.175	15.0년	0.750	26.5년	1.325
4.0년	0.200	15.5년	0.775	27.0년	1.350
4.5년	0.225	16.0년	0.800	27.5년	1.375
5.0년	0.250	16.5년	0.825	28.0년	1.400
5.5년	0.275	17.0년	0.850	28.5년	1.425
6.0년	0.300	17.5년	0.875	29.0년	1.450
6.5년	0.325	18.0년	0.900	29.5년	1.475
7.0년	0.350	18.5년	0.925	30.0년	1.500
7.5년	0.375	19.0년	0.950	30.5년	1.525
8.0년	0.400	19.5년	0.975	31.0년	1.550
8.5년	0.425	20.0년	1.000	31.5년	1.575
9.0년	0.450	20.5년	1.025	32.0년	1.600
9.5년	0.475	21.0년	1.050	32.5년	1.625
10.0년	0.500	21.5년	1.075	33.0년	1.650
10.5년	0.525	22.0년	1.100	33.5년	1.675
11.0년	0.550	22.5년	1.125	34.0년	1.700
11.5년	0.575	23.0년	1.150	34.5년	1.725
				35.0년	1.750
				35.0년 이상	(1.75 환도)

\*계산식 : (공제회비+실적회비30%)×{0.75+[(n-15)×0.05]}

\*n : 개업연수(회비납부연수)

<별 표 4>(2025. 2. 10 신설)

시행일	노령공제금 신청 가능 연령	노령공제금 신청 대상자
2025. 4. 1.	만 74세	1951. 4. 1.
2026. 4. 1.		1952. 4. 1.
2027. 4. 1.		1953. 4. 1.
2028. 4. 1.	만 73세	1955. 4. 1.
2029. 4. 1.		1956. 4. 1.
2030. 4. 1.		1957. 4. 1.
2031. 4. 1.	만 72세	1959. 4. 1.
2032. 4. 1.		1960. 4. 1.
2033. 4. 1.		1961. 4. 1.
2034. 4. 1.	만 71세	1963. 4. 1.
2035. 4. 1.		1964. 4. 1.
2036. 4. 1.		1965. 4. 1.
<b>2037. 4. 1.</b>	<b>만 70세</b>	<b>1967. 4. 1.</b>